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 보고서

VOLUME 2

개요

본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종교 및 신념을 가진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인권 침해에 관한 증거들은 244명의 피해자와 141명의 가해자를 포함하는 456건의 인권 침해 사례들에 기반하며, 해당 인권 침해 사례들의 97%에서 기록된 인권 침해 범죄들은 북한 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는 북한 내 기독교와 무속신앙 신도들이 겪은 임의적인 체포 및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 국제 원칙에 반하는 강제 송환, 생명에 대한 권리 침해, 그리고 성범죄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록들은 198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기반한다. 이러한 인권 침해 범죄들은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이는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향해 행해지는 조직적 탄압 정책의 일환이다.

북한 내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 침해 사례들은 흔히 “종교의 자유”로 불리우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인간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 권리는, 기본권이자 보편적인 권리로서 무신론 및 무신앙의 자유, 종교 및 사상에 기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종교 및 사상을 채택하거나 개종할 자유, 종교 및 신념을 개인 혹은 집단으로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본 보고서는 한미래의 2020년도 종교의 자유 실태 조사 자료와 통합하여 작성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록된 인권 침해 범죄, 탄압, 학대 등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본 보고서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 탄압에 북한 내 모든 권력 기구들이 관여했으며, 그 중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소, 조선노동당은 탄압의 주체로서 작용함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증거 사례 중 다수는 구체적인 인권 탄압 사례에 관련된 실명의 가해자와 소속 권력 기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보고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종교의 자유 탄압 정책에 관련된 명령 체계와 문건들, 인권 침해 범죄 활동에 궁극적인 책임 소지가 있는 고위급 간부들과 연관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증거 수집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 탄압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해당 탄압을 지휘, 계획, 묵인한 개인들에게 인권 탄압 정책의 책임을 묻는 향후 책임 규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한미래의 북한 종교의 자유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유롭게 조회 및 이용 가능하다.

조사결과

임의적 자유 박탈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대다수의 기록 사례에서 종교 관계자들의 체포, 구금, 재판 과정 내 부당성과 더불어 세계 인권 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의 국제 협약 및 원칙에 기반한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 가담한 종교 관계자 체포 사례 어디에서도 해당 피해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상당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예를 들어 종교 및 신념의 표현, 종교 및 신념에 관련된 예배나 집회, 이를 위한 공간을 설립할 권리에 대한 부정에서 기인하는 피해자들의 임의적인 자유 박탈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사례, 특히 무속신앙인들에 대한 행정처벌도 종교 관계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자유 박탈로 간주하였다.

강제노동

강제 노동을 동반한 형벌에 관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해당 사례들은 강제 노동 협약이 허용하는 위기 상황에 따른 강제 노동이나 소규모 사회봉사의 형태가 아니며, 강제 노동 협약이 제시하는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수집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내에서 행해지는 강제 노동(노동단련형 및 노동교화형)을 동반한 형벌의 형기와 노동 강도는 국제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
- 북한 당국 관계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노역을 강요했다;
- 강제 노동은 물리적 폭행 등의 위협과 학대 아래 이루어졌다;
- 임의적인 자유 박탈을 경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 당한 수용자들이 이러한 강제 노동에도 동원되고 있다.

종합하여, 이러한 사례들은 강제 노동 협약 등의 국제 협약에 위배된다.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내에서 종교 및 신념과 관련된 이유로 체포나 구금을 당하는 이들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그리고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당한다. 피해자들은 북한 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주먹이나 발, 도구를 이용한 신체적 폭행, 오염된 음식 섭취, 고정 자세, 수면 박탈, 앉았다 일어나기(뽀뽀),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경험한 여러 구금 시설의 내부 환경들이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대우에 상응하였다. 몇몇의 경우에는, 고문이 강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국인 및 유럽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북한 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한 이유로 구금되어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된 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무속신앙 관계자 및 기독교 관계자들이 부당한 생명권 박탈의 희생자가 된 사례도 기록되었다.

강제송환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기독교 관계자들은 북한 영토 내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이 출생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어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의 법적 또는 이민법상 신분에 상관없이 해당 개인을 국가가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 공안 경찰들이 복송되는 북한 주민들 중 중국 내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이들의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례를 확인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중국 공안의 기독교 관계자 식별은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이 심문 과정에서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및 처벌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기반 권고사항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 기관, 세계 각국의 정부, 시민 단체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 각국의 정부와 후원 기관들은 시민 단체, 언론 매체 및 기술 개발 단체에게 자금 및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책임 규명 관련 정보와 미래 제의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의무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북한 내부에 퍼뜨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제 사회의 인권 침해 관련 조치가 북한 내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었다. 과거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든 구금 시설 내의 인권 침해 기록이 하나의 예시이다.

북한 내에 배포되어야 하는 가해자 책임 규명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아도 해당 인권 침해와 관련된 계획 및 체계에 동의하고 가담한 직접적 가해자에 대한 책임 관련 정보; 2) 구금 시설 등 내부 환경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유지, 지휘, 행정 업무 집행에 관여하였거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인권 침해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관리자 등 간접적 가해자에 관한 책임 관련 정보; 3) 인권 침해를 자행한 휘하 관리 및 병력들의 직속 상관 혹은 지휘관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 침해 정황을 포착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방지하거나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지도부에 관한 책임 관련 정보.

이러한 정보들을 북한으로 배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가해자들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 범죄를 막고, 잠재적인 인권 침해 범죄를 예방하며 상습적인 가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 내부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인권 침해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도와 더 많은 목격자와 피해자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문서화하고 이 기록들을 북한 외부의 단체들에 전달하여 기록 보존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2

북한 내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수의 책임 규명 매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UN, 국제사회 내 각국 정부들, 시민 단체, 법조인들은 가해 기관, 판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적 책임 규명이 사용될 수 있는 증거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북한 관련 인권 침해 사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향후 접근법이 될 것이다.

3

나아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형법 사이의 연계성 증거를 확보 및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함으로써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증거의 확보 및 보존은 모든 책임 규명 관련 사업에서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연계성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고위 관리 가해자들의 기소에 사용될 증거 목록, 기소장, 그리고 준비서면 작성의 기반이 되며, 해당 가해자가 국내외 법 집행 기관을 비롯하여 개별 국가 및 국제 기관 산하 사법 체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 이는 북한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 개별적인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들의 신상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계성 증거의 확보 및 보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당 및 관련 기관 조직도를 조사 및 기록해 전반적인 명령 체계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나, 노동당 내부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해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북한 내 가해자 책임 규명에 있어 단기(국내적으로 민사 및 형사 사건 추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유엔 특별재판소 및 혼합 재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모델은 가장 최근의 북한 인권 기록 형식을 넘어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함으로써 향후 반인륜적 범죄 및 인권 침해에 가담한 가해자 책임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인권 침해 가해자 개인 및 가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 역시도 이뤄져야 한다. 종교 및 신념과 관계된 개인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제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선별적 제재는 개별국가 혹은 유럽 연합의 제재 레짐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244

피해자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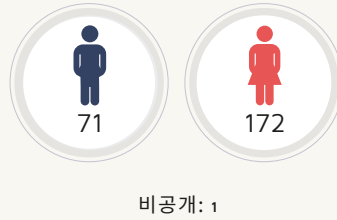
가해자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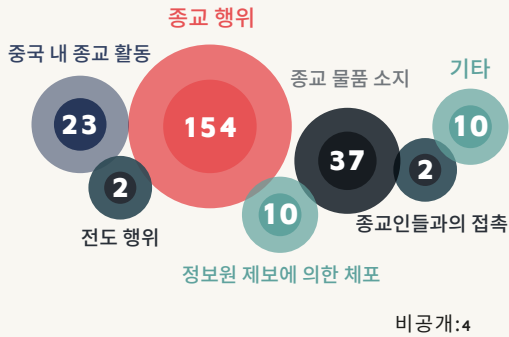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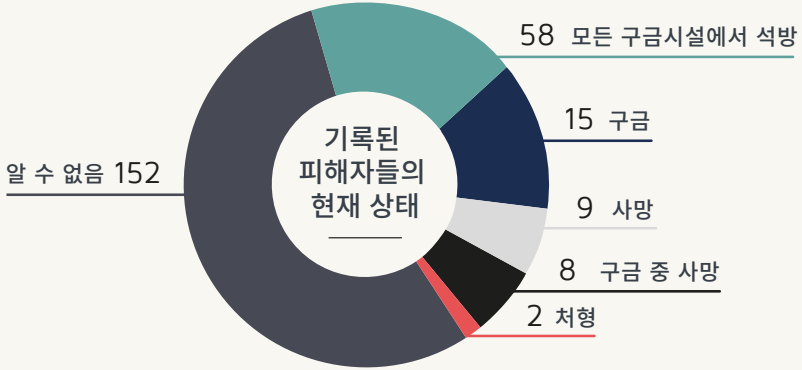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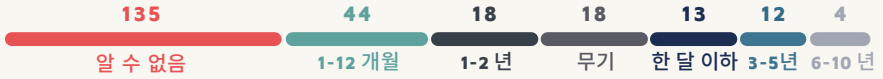
피해자 성별



자유 박탈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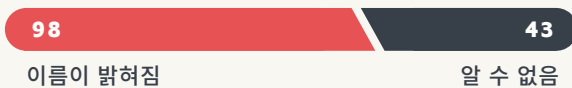
구금 기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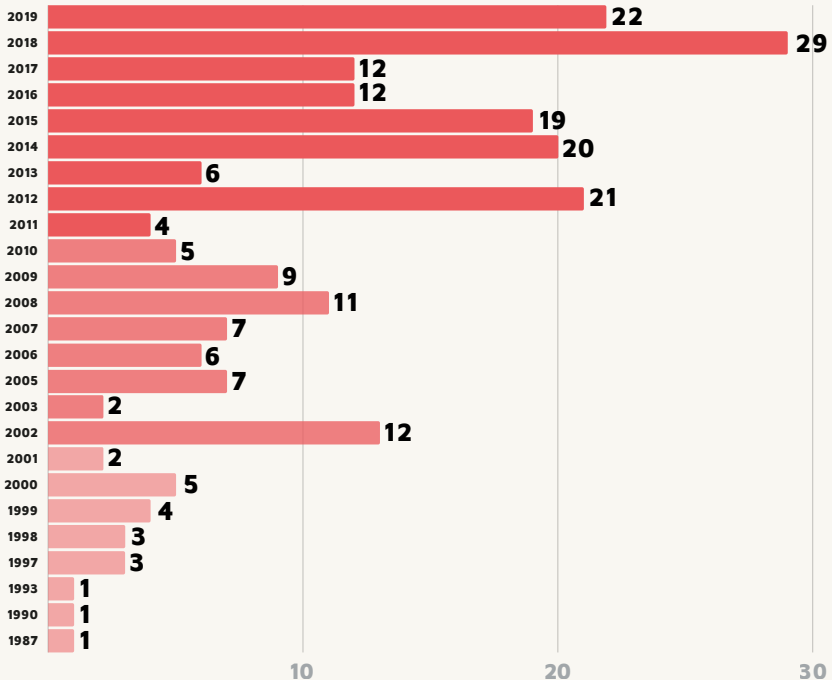
가해자



피해자의 종교 또는 신념



연도별 기록된 침해



종교 관계자에게 자행된 인권침해



207 임의적인 자유 박탈



73 강제노동



53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



36 공정한 재판 거부



36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거부



27 강제송환



16 생명권 거부



2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종교 관계자에게 자행된 고문 형태



주먹 또는 발을 이용한 구타



물건을 이용한 구타



오염된 음식 섭취



고정자세



언어 폭력



앉았다 일어나기



수면 박탈

본 보고서와 2020년 발간된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 보고서(Vol.1)”
가 발간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여러 경험을 증언해주신 217명의 피해
자, 목격자 및 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과정에 있어 도움을 주신 탈북민분들과 관련 단체들, 특히 통일소망선교회와 PS 측
에도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 2021 한미래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 보고서 (Vol.2) © 2021, 한미래 저.

디자인 및 데이터 시각화: whateyemade.com

koreafuture.org

한미래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선단체 법인이다 (1185332).